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1.11.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4.01
개정	2015.04.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10..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함)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목표의 달성과 NCS기반 교육과정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본부장, 교학본부 부분부장, 기획산학본부장, NCS운영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본 대학 각 스쿨 전임교수와 5인 이내의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교학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과목의 학기변동 또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 위원회는 우리대학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NCS 기반 교육과정 인증 및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4.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교수학습지침서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
10.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 6조 (삭제)

제 6조의2(교육품질관리)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소속 스쿨의 「NCS 기반 및 현장중심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서」의 책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03.01.)

제 7조 (삭제)

제8조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본부에서 담당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